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. 5. 29 선고 2017가단683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]

전 문

원 고

피 고

A

B

변론 종결 2018. 5. 1

판결 선고 2018. 5. 29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보령시 C 답 96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내지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156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와 D은 2005. 1. 10. 보령시 C 답 96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 중 각 1/2지분에 관하여 2005. 1. 4.자 매매'를 원인으로 한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이후 원고는 2009. 7. 6. 위 D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/2지분에 관하여'2009. 6. 25.

공유물분할'을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.

나. 피고 소유의 주택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내지 9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156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등을 통해 그 대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그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 및 판단

1) 피고 주장의 요지

피고의 남편 망 E가 2000. 10. 16.경 보령시와 사이에 보령시 F 임야 24,242㎡ 중 657㎡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, 이후 피고가 2005. 1.경 보령시와 사이에 같은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.

이후 위 토지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G 임야 13,176㎡로 분할되었고, 그에 따라 피고가 2010. 7.경 위 분할된 토지 중 668㎡에 관하여 보령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고 있는바, 원고 주장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은 위 피고가 보령시로부터 대부받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

2) 판단

살피건대, 을 제3, 4, 6, 7, 8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)에 의하면, 망 E 및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을 보령시와 체결한 사실,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0. 7. 2.에 실시하여 작성한 지적측량결과부에 피고가 위대부 대상 토지 668㎡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, 보령시 지방행정서기 박수완이 2010. 7. 23. 작성한 대부 신청 대상지에 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'보령시 G 임야 13,176㎡ 중 668㎡ 부분을 현지확인한 결과 주거 목적의 건물이 있음을 확인함'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된다.

그러나 위 증거들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보령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, 위 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10. 7. 2.에 실시한 측량결과에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표시된 668㎡ 부분은 말 그대로 단순히 피고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표시한 것일 뿐,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 아님은 물론, 당시에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던 점, 보령시가 작성한 위 2010. 7. 23.자 결과보고서는 별도의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위치를 특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를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(한편,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추가하겠다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, 피고가 참고서면에 첨부한 자료 및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청구가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,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).

3.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이수현

별지